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eAnSe.com • • • 2021/2/7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:計:經營 戰略

은퇴 후 단독개인사업과 친구들 간 공동사업의 실행방법별 세금차이

공동사업방법	세금계산 방법, 기타의 부담금 등
개인 단독사업	총매출-원가·비용 = 1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단계누진세율(6~45%) 적용(연단위 높은세금)
법인 단독사업	총매출 - 원가·비용 - 대표자 본인과 직원 급여(근로소득) = 순이익에 대해 법 인세율(2억까지 11%)
2인 공동사업	총매출 - 원가·비용 = 순이익÷2인 = 1인당 소득에 다단계누진세율 적용×2인 (낮은세금)
가족공동사업	총매출 - 원가·비용 = 1인의 종합소득으로 봄(분산되어도 최대 지분비율 자의 1 인소득으로 봄)
근로공동사업	총매출 - 원가·비용 - 1인근로소득(근로소득공제도 적용) = 나머지 1인의 종합소득누진세율(제일 낮은 세금)
출자공동사업	총매출 - 원가ㆍ비용 = 순이익 - 출자 1인배당 종합소득 = 주사업1인 종합소득
다수공동사업	총매출 - 원가ㆍ비용 = 순이익÷사업자수 = 1인당 종합소득×세율×다수
명의공동사업	총매출 - 원가ㆍ비용 = 실질 1인의 종합소득×세율(분산명의자는 불인정)
공동사업 필수	① 출자비율·역할을 명시한 동업계약서 ② 총거래액의 단일사업자 기장, 신고의무 ③ 근로소득공제 등의 절세목적을 위해 일부 공동사업자를 동일소득의 급여 근 로자로 처리할 수 있음